

# 언론중재위원회 창립 30주년 기념 좌담

언론조정 · 중재제도 30년 역사에 대한 평가와 전망



일 자 2011년 3월 7일 11:00

장 소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

사회자 정준영(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제4중재부장)

참석자 한동원(전 언론연구원장)

황덕남(변호사, 서울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

김상우(중앙일보 차장, 신문방송학 박사)

정혜승(Daum 커뮤니케이션 대외협력실장)

오사와 분고(大澤文護 - 마이니치 신문 한국 지국장)



정준영 사회자

**사회자:** 올해는 언론중재제도 시행 및 언론중재위원회 창립 3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언론중재제도는 시행 초기 언론계로부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로 비판을 받기도 하였으나, 그

간 언론학자와 법률가 및 실무자들의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현재 가장 중요한 언론피해구제제도도로 발전해왔습니다.

30년 동안 성장한 위원회의 현재 모습을 평가해 보고,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해보는 뜻 깊은 자리를 갖고자 이번 좌담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한동원 전 언론연구원장께서는 1981년부터 1990년까지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을 역임하시고, 이후 9년간 중재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위원회 설립과 제도 정착에 가장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누구보다 애정을 갖고 위원회를 지켜봐 오셨으니, 초창기 위원회에 대한 사회적인 반응 등 위원회와 제도의 설립과 발전 과정에 대한 설명을 비롯해, 위원회에 대해 많은 조언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황덕남 변호사께서는 서울법원조정센터 상임 조정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조정 전문가입니다. 법원에서는 2009년 민사조정법 개정으로 상임 조정위원 제도를 도입했는데 조정위원은 15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만 가능한 중책입니다. 위원회가 성공적인 조정기관이 되기 위해 언론조정·중재제도와 법원조정제도를 비교해 어떤 점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가야 하는지 고견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김상우 차장님께서서는 중앙일보에서 20여 년 동안 기자로 재직하는 동안 오랜 기간을 사회부에서 근무하셨습니다. 취재 현장에서 경험을 토대로 언론중재위원회와 제도에 대해 생각하고 계신 바를 허심탄화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작년에 '인터넷 미디어에서의 반론권 적용에 관한 법제도적 연구' 논문으로 신문방송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신청

인과 피신청인, 중재위원을 심층 인터뷰하는 방법으로 위원회와 제도를 연구·분석하셨기에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정혜승 실장님은 다음(daum)커뮤니케이션 대외협력실장으로 계십니다. 2009년 8월 개정 언론중재법 시행으로 포털이 언론조정·중재 대상에 포함되었고, 실제 작년에 포털을 상대로 한 조정신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주요 포털사인 다음(daum)에서 중책을 맡고 계신만큼 포털의 입장을 대변해 현행 법률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많은 의견을 갖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사와 분고 지국장님은 마이니치 신문 한국 지국장입니다. 언론조정·중재제도는 세계 고유한 언론분쟁 해결 제도이므로 자칫 보편성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일본에서의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 해결과 피해 구제 방법에 대해 한국의 제도와 비교해 보고, 외신기자의 시각에서 위원회와 한국의 언론피해구제제도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럼, 좌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 “언론기본법에 의해 도입된 중재제도, 제5공시절 정부기관에 의한 청구 없어”

**한동원:** 1981년 언론중재위원회 설립 초기에는 언론탄압이란 이유로 언론중재제도에 대해 학계와 언론계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당시 일부 독소조항 때문에 악법으로 규탄 받던 언론기본법에 설립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제도 자체의 좋고 나쁨을 떠나 반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언론중재제도가 시행된 1981년부터 언론기본법이 폐지된 1987년까지의 제5공화국 기간 중 국가기관에서 언론사를 상대로 한 중재(실제는 '조정')신청이 1건도 없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년에 50~70건의 중재신청이 있었는데 모두가 민간인들입니다. 민간인들의 중재신청을 통해 간접적으로 언론을 귀찮게 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중재제도를 언론을 탄압하는 직접적인 방편으로 이용할 생각보다는 언론의 침해를 받은 피해자

들이 법적인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쉽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언론과의 대결을 공공연히 내세웠던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 당시에는 해마다 정부기관이 최저 101건에서 최고 190건의 중재신청을 했던 사실과 비교하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황덕남:** 제가 변호사로 개업한 1998년 당시에는 언론 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에 대해 사회 일반의 인식이 강해져 있었고, 이로 인해 언론관련 소송이 많아지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위원회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지도는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작년 한 해 동안 위원회가 처리한 사건이 2,205건인데 이는 위원회 초창기에 비해 약 50배 증가한 것으로, 단순히 처리 사건수로만 봐도 과거에 비해 위원회의 인지도가 높아졌고 제도가 확고히 정착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 “위원회 처리 사건수는 대상 매체수와 비례하여 증가, 사건수 증대를 질적인 성장의 척도로 간주 해선 안 돼”

**한동원:** 위원회 설립 초기에 비해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한 오늘의 모습을 보면 경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설립 당시 5~6명이던 사무처 직원이 지금은 70명 정도로 늘었고, 조정·중재신청 처리건수도 초기에 비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사회가 한층 더 다양화되고 매체수도 많아졌으니 자연적인 추세라고 봅니다.

그러나 처리건수가 초창기에 비해 많이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질적인 성장의 척도로 간주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1981년부터 1988년까지는 연평균 55건 정도의 중재신청이 있었는데, 이때는 언론기본법에 따른 언론통폐합으로 전국에 일간지가 12~15개 밖에 없었으니 중재신청이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987년 6·29선언으로

· 1980년대, 언론보도에 대한 문제의식 낮았으나 언론중재제도 정착되면서 사회적 인식 높아져

· 위원회 처리 사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조정·중재대 상매체수가 증가한 영향도 있음.

사건수 증대를 위원회의 질적인 성장의 척도로 봐선 안 돼

· 시정권고는 실효성이 없는 권고에 불과해 언론사가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여도 제재할 방법이 없음. 공개경고나 과징금 부과 등 제재규정도입 검토 필요



한동원

언론사의 설립요건이 등록제로 완화되면서 매체수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 1989년 이후에는 일간지가 120개를 넘었고, 주간지와 월간지도 수없이 생겨나면서 중재신청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이 매체수 증가와 함께 한편으로는 매체는 급격히 늘었으나 자질을 제대로 갖춘 기자가 많이 부족했다는 점도 중재신청 증가에 한몫을 했다는 것이 당시의 평가였습니다.

2010년도 위원회가 처리한 사건이 2,205건인데, 종전의 일반매체를 대상으로 한 신청도 약간은 늘었으나 포털을 포함한 인터넷뉴스서비스가 약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앞으로 새로운 매체가 조정·중재 대상에 포함되면서 신청사건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위원회, 중재위원과 조사관의 역할분담 우수 전문성과 성공적 조직운영으로 위상 제고”

**사회자:** 황덕남 위원님께서 서울법원조정센터 상임 조정위원으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분쟁을 접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분쟁의 해결 과정이란 측면에서 언론중재위원회는 법원조정센터와 비교해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황덕남:** 처리 사건수의 증대는 조정대상매체의 증가도 영향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위원회가 전문성을 갖고, 운영을 잘 해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적인 조정을 위해서는 사건의 특성, 분쟁당사자의 성격, 조정자의 역할, 이 세 가지가 조화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판결이나 조정 과정에서 이 전부를 판사나 조정위원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법조인, 학계, 언론계 출신 등 언론 분야 전문가로 중재위원을 구성하고, 조사관 제도를 둬으로써 중재위원은 조사관을 통해 사건이나 분쟁당사자의 특성을 미리 파악하고 조정에 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재위원은 조정의 3박자 중 2가지를 이미 갖추고 조정자의 역할인 해결 방안을 찾는 데만 전념할 수 있어서 성공적인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와 같이 전문성과 함께 조사관 제도를 통해 역할 분담이 잘 되어 있는 곳으로 중앙노동위원회를 꼽고 싶습니다. 언론분쟁과 노동분쟁으로 인해 법원에 오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은 바로 언론중재와 중앙노동위와 같은 해결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와 신뢰성이 확실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 “소송과 비교할 때 효율성 높지만 손해배상 청구로 ‘언론의 위축’ 우려”

**사회자:** 앞서 한동원 원장님께서 초창기에는 위원회와 언론중재제도에 대해 언론계의 거부감이 심했다고 하셨는데, 주로 위원회의 피신청인 입장이 되는 언론사와 포털의 입장에서는 현재 언론조정·중재제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김상우:** 언론사 입장에서도 언론조정·중재제도가 소송에 비해 시간적, 경제적, 심리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위원회에 제소되면 언론사가 무슨 큰 잘못을 한 것으로 인식되는 분위기였고 언론사나 기자는 위원회에 거부감을 가진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법원(소송)으로 가지 않고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제도의 장점이 많이 부각된 덕분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위원회 제도가 부담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제소되면 나중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담당기자는 ‘결백’을 주장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데스크는 중재위원회에 출석해야 합니다. 조정이나 중재가 반론보도문·정정보도문을 신문에 게재하는 것으로 결론나면 더 말할 필요가 없죠. 여기에다 2005년 언론중재법 제정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짐에 따라 부담이 커졌습니다. 규모가 큰 언론사도 그렇지만, 소규모의 언론사에 대한 손해배상은 언론사 운영에 큰 부담이 되므로 언론보도에 대한 위축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언론조정·중재제도는 효율적인 피해구제 제도이면서 동시에 언론사에 부담을 주는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 “포털, 기사 자체에 대한 권한 없어 조정·중재대상에 포함되어 절차적 소모 반복”

**정혜승:** 2009년 언론중재법 개정으로 포털이 조정·중재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포털의 파급력을 인식하고 법률 개정을 통해 언론조정·중재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이라 생각하나, 이로 인해 실무상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위원회가 처리한 전체 청구건수 중 38.1%가 포털에 대한 청구사건이었습니다. 다음(daum)의 경우 매일 평균 2천만 명이 방문하고 있는데, 현재 대다수 일반인들은 거의 모든 뉴스를 인터넷을 통해 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포털에 대한 청구건수가 많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포털에서는 위원회에 참석한다 하더라도

도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와 신청인의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것 외에는 다른 분쟁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포털이 직접 작성한 뉴스가 아니라서 이유로 무책임하게 대응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포털은 콘텐츠에 대한 권한이 실제로 없기 때문에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의 의사에 반하여 정정보도 등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포털이 조정·중재절차에 직접 참여해야 하는 절차적인 소모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과 제도를 보완하여 주된 언론사와 합의된 결과물을 포털이 신속히 이행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사와분고:** 한국에서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언론 보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분쟁이 발생하면 대부분 소송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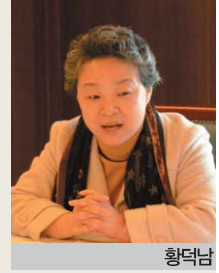
무엇보다 일본 언론사의 가장 큰 고민은 신문, 방송 등 언론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론 보도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사회적 평가가 있어, 언론사는 독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로 기사 취재 방법의 개선을 통한 언론 전체에 대한 이미지 향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언론사 자체적으로 기사에 대한 문제제기를 최소화하고 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혹은 ‘~라 알려졌다’와 같은 익명을 전제로 한 보도나 모호한 표현을 최소화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취재 방법이나 기사 작성 방법은 매우 어렵지만, 이러한 노력이 없다면 언론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 “일본 법원,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배상 언론사에 수억 원까지 배상 판결”

**사회자:** 일본의 경우 언론사 자체적으로 기사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문제 발생시에는

· 언론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중재위원은 조사관을 통해 사건의 특성과 분쟁당사자의 성격을 미리 파악, 분쟁의 해결책 제시라는 조정자의 역할에만 전념할 수 있어 성공적인 조정이 가능



황덕남

· 일반적으로 접근도와 소요시간에 따라 분쟁이 쉽게 해결됨. 언론분쟁도 최대한 빠른 시간에 당사자 간 협의 또는 조정을 시도하는 것이 소송에 비해 바람직

· 위원회가 우리 사회의 예방적·자율적분쟁해결을 촉진하는 기관으로 자리 잡길 희망하며 이를 위해 위원회 홍보 강화가 필요함

소송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분쟁 해결을 위한 언론사 간 협의체나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법원에서는 피해구제가 잘 이뤄지는 편인지, 즉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간에 방점을 어디다 두는지, 손해배상 금액은 대략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오사와분고:** 일본에는 언론중재위원회와 같은 기관이 없습니다. 신문협회가 있으나 언론중재위원회처럼 직접 청구를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기관이 아니라 언론사 자체의 문제, 즉 언론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고민하는 곳이라 알고 있습니다.

언론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부분 소송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법원에서는 정정보도, 사과보도, 손해배상 등에 대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경우,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적게는 몇 백만 원부터 많게는 몇 억 원까지 명령한 경우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이 큰 경우, 이는 기자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조직의 문제

로 사회에서 평가하고 있어 소송을 피하기 위해 신문사는 자체적인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일본, 조정·중재제도와 같은 사후 피해구제제도 없어 언론사 자체적으로 분쟁의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

**사회자:** 주로 위원회의 피신청인이 되는 언론사와 포털의 입장에서 김상우 차장님과 정혜승 실장님은 위원회와 언론조정·중재제도의 부정적 측면과 양면성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하고,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오사와 분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듣기에 한국에서는 조정·중재제도와 같이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사후적인 접근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먼저 그러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지를 교육시키고 시스템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문사에 입사한 1980년도의 경우 일본에서는 이미 인권에 대한 시민의식이 아주 강했습니다. 따라서 신문사에서는 인격권 침해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마이니치신문의 경우 1980년대 초부터 기사에 기자의 실명을 넣기 시작했고, ‘기자의 눈’이란 칼럼에서는 기자의 얼굴 사진까지 넣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자의 책임감을 강화하여 기사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부터는 사내에 ‘열린신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문사와 전혀 관계가 없는 변호사, 자유 저널리스트 등 4명의 외부 전문가를 초청, 고정해두고 매일 신문 기사를 체크하여 기사의 문제점과 외부의 지적을 검토해 신문사 간부에게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다수 신문사는 이와 유사한 자체 검토 시스템을 두고 있습니다.

### “1980년대, 언론보도에 대한 문제인식 낮아, 언론중재제도 정착되면서 사회적 의식 높아져”

**사회자:** 일본의 경우, 1980년도에 언론사가 자체 심의 시스템을 강화하고자 노력하는 등 이미 언론보도에 대한 사회적인 의식이 아주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한국의 언론보도에 대한 문제인식의 수준은 어떠했습니까.

**한동원:** 1980년대 초반의 위원회 계간지 『언론중재』를 보면 그 내용이 매우 부실합니다. 당시에는 기사의 문제점에 대한 언론사의 인식이나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초상권 침해 등 개인의 법익에 대한 사회적인 의식이 약했고, 언론법제와 관련한 전문적인 논문을 쓸 수 있는 언론학 교수, 법조인, 언론인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언론중재』가 해를 거듭하면서 언론법제에 관한 논문과 자료들을 집적해왔습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언론법제를 연구하는 언론학 교수, 법조인 언론인들이 늘어가면서 각 대학의 언론학과에 언론법제 과정이 개설되기 시작했는데, 『언론중재』가 교재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언론사에서조차 점차 기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인식을 갖고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처럼 위원회가 『언론중재』를 통해 우리나라 언론법제 발전에 기여한 공이 절대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며, 위원회와 언론중재제도가 우리 사회에서 언론보도에 대한 의식 향상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우:** 중앙일보도 사내 변호사 제도와 기자실명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팩트체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신문이 발행된 뒤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취재와 기사출고 과정에서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등 인격권 침해를 비롯한 다양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예방하는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언론사가 보도로 인한 피해 발생의 문제점을 인식하고자

체적으로 노력을 강화한 것은 한동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같이, 중재제도가 정착되어가는 과정에서 영향을받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신문사마다 사전 심의에 노력하고 있고, 출고부서에서도 이러한 지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심의를 담당하는 기사는 취재기자가 아닌 제3자로, 신문의 첫독자인 셈인데 이들이 봤을 때 문제가 있다면 일반독자들이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출고부서가 적극수용하는 것 같습니다.

**황 덕 남:**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와 언론사간 분쟁해결 방법에 대한 접근시각을 보니, 문제발생시 해결까지 접근도나 시간이 가까울수록 해결이 쉬운 것 같습니다. 기사에 대한 문제 제기시 언론사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경우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를 통한 경우에는 양당사자가 서로 많이 양보하여 분쟁이 쉽게 해결되는데, 소송까지 간 경우에는 모두 한발 물러섬 없이 완강한 입장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언론사가 자체적인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고, 만약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언론사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 “포털의 표시의무, 기사의 신뢰성을 훼손하기 위해 악용될 소지 있어”

**사 회 자:** 위원회와 언론조정·중재제도가 언론보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향상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반면, 2009년 언론중재법 개정으로 포털이 조정·중재의 대상으로 포함되었는데, 이는 포털의 영향력, 확산력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법 개정 이후 최대의 쟁점중 하나가 포털과 관련한 부분인데, 포털에서도 포털이 게재한 뉴스로 인한 문제 발생시 책임이 있다고 보는지, 사전문제 예방을 위해 자체

· 조정·중재제도는 효율적인 제도이나 위원회에 제소되면 입증자료 준비 및 심리 참석 등 언론사에 부담으로 작용함. 특히 손해배상청구는 언론보도에 대한 위촉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김상우

· 신청인 입장에서는 누가 기사를 생산했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포털을 통해 공표, 확산됨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므로 법률 개정을 통해 포털이 조정·중재대상에 포함된 것은 바람직함

· 피해구제문 이행방법으로 인한 분쟁의 예방을 위해 중재부가 당사자에게 합의나 결정 내용 등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야 함

적인 노력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정 혜 승:** 다음(daum)에서도 법에서 정한대로 기사배열 책임자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포털의 영향력 증대에 따라 법적인 책무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2006년부터 외부 변호사, 학자, 실제이용자대표위원회를 구성하여 미디어서비스를 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불편부당하지 않고 중립적이고 신중하게 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 비판과 감시를 받기 위해 열린이용자위원회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 언론중재법 개정으로 포털에 대한 직접적인 정정, 반론, 손해 청구 등이 가능해졌는데 포털은 실질적으로 기사수정이나 정보도 게재 등 뉴스자체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만약 권한이 있다면 당연히 이는 언론독립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포털의 주요 의무 중 하나인 표시의무와 관련해 신청인 입장에서는 표시가 너무 약하다고 더 강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지만, 해당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는 독자들에게 기사에 뭔가 문제가 있으니 위원회에 제소된 거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 꼬리표, 즉 표시를 달아 기사의 신뢰성을 깎아 내리기 위해 언론중재제도와 포털의 표시 이행의무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표시 자체가 더 이상 커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 “포털, 기사 배열을 통해 뉴스 접근성 높여 문제 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져야”

**사회자:** 김상우 차장님께서는 언론조정·중재제도의 이미지 등에 대해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심층 인터뷰해 논문을 작성하셨습니다. 그 결과를 요약하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포털에 기사를 제공하는 언론사 입장에서 정혜승 실장님의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상우:** 연구결과신청인은 언론의 잘못으로 피해를 당했다는 의식이 강하나 거대 언론사를 상대로 피해구제를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 언론사는 부당하게 제소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신문과 같은 소규모 매체는 잦은 언론조정·중재 청구가 언론사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포털도 인터넷 신문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포털에 대한 잦은 청구는 포털뿐 아니라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에도 압박이 되어, 결국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포털도 조정·중재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사로 인해 피해를 당한 신청인 입장에서는 누가 기사를 생산했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포털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공표, 확산됨으로써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으나,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한 소비자가 피해를 당한 경우, 마트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마트는 제품을 직접 생산하진 않지만, 여러 제품

들을 잘 정리하여 배치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쉽게 제품을 접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뉴스’라는 제품에서 포털은 대형마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인격권 침해라는 피해가 발생하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포털의 책임은 뉴스의 가공(加工) 여부로 결정, 뉴스 배열은 가공인가?”

**한동원:** 정혜승 실장님은 포털이 조정대상에 포함되어 직접적인 정보요청 등도 가능해 진 것에 답답함은 토로하셨는데, 연합뉴스와 같은 통신사가 제공한 기사를 신문과 같은 일반 언론이 게재한 것과, 일반 언론이 제공한 기사를 포털이 게재한 것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합뉴스로부터 제공받은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 경우, 해당 언론사가 연합뉴스라는 기사 출처를 밝히고 제공받은 기사를 그대로 게재했다면 해당 언론사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연합뉴스로부터 제공받은 기사를 가공하여 게재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포털이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사를 게재하는 과정에서 어떤 ‘가공’의 과정을 거친다면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혜승:** 다음(daum)의 경우 80개 매체에서 하루 2만여 건의 기사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언론사가 계약을 통해 일부 기사만을 포털에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현재로선 언론사로부터 생산한 기사 전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사에 대해 저희가 선별적으로 게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터링 자체는 언론의 독립성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포털은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에 대해 일절 가공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사 내용 자체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우**: 포털에서는 기사 콘텐츠를 일절 가공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가공 여부에 대한 시각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daum)이 하루 2만여 건의 기사를 언론사로부터 공급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포털의 메인 화면이나 뉴스면 등에 게재되는 것은 몇 건에 불과합니다. 이는 기사 선별이며, 이 자체를 가공이라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정혜승**: 앞서 포털에서도 기사 배열 책임자를 공개하는 등 기사 배치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수긍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포털에 게재된 기사를 대형마트에 진열된 물건으로 본다면, 물건 자체를 수정하거나,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꼬리표를 다는 것은 제조사에서 해야 할 일이지 마트의 권한 밖이라는 것입니다.

언론중재법 상 포털이 조정·중재 대상에 포함된 것은 타당하고 자연스런 것이라 생각하나, 포털은 콘텐츠 자체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점을 재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자**: 한국과 같이 인터넷 문화가 발전한 일본의 경우도, 포털이 제공 또는 매개한 기사에 대해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본의 언론사와 포털의 관계는 어떤지, 포털에 게재된 기사에 대한 문제제기시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오사와 분고**: 한국에서는 신문사가 생산한 기사 전체를 포털에 제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본에서는 약 40%를 신문사가 자체 선별해 포털로 송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털은 신문사가 제공한 기사에 대해 별도로 선별하는 과정 없이 전부를 게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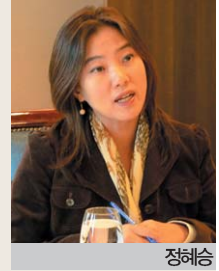
포털에 게재된 기사에 대한 문제점이나 수정요청 등이 제기되면 포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와 협의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털의 확산력은 큰 문제인데, 포털에 게재되면 카피가 반복되어 기사가 확산되는데 이를 방지할 방법은 없습니다.

**사회자**: 여러 의견을 종합하자면 언론사로서는 소송이

· 포털은 정정 및 반론 보도 등 기사 내용의 수정에 대한 권한이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중재 절차에 참석해야 하는 실무상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언론사와 합의된 결과물을 포털이 신속히 이행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할 필요 있음

· 포털의 표시의무에 대해 기사제공 언론사는 기사에 원가 문제가 있다는 표시를 달아 기사의 신뢰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음

· 신청인이 언론사나 포털을 압박하기 위해 조정·중재 제도를 남용할 우려가 있는 만큼, 잦은 신청인의 명단 공개 방안 검토



정혜승

나 언론조정·중재제도에 대해 부담스런 점이 있으므로 거기에 맞춰 자체적인 피해예방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분쟁이 발생한 후 피해구제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사전에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 최종 목표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전예방이 최선일 것이나, 완벽한 예방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 언론조정·중재제도와 같은 사후구제 제도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조정·중재의 결과물을 어떤 방법으로 게재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언론사에서도 수용하기 쉬운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포털의 경우, 콘텐츠 자체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특성을 고려해 효율적인 피해구제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 “신청인이 최소한의 결과물에 마지못해 ‘취하’ 하는 경우, 피해구제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한동원:** 피해구제율의 경우, 1981년부터 2007년까지는 50~60%인데 비해 지난해에는 79.2%로 역대 최고였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평가도 그만큼 높아졌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작년 처리사건 2,205건에 대해, 조정성립된 사건은 전체 사건의 28.6%인 630건 뿐이며, 51.3%인 1,131건은 취하된 사건입니다. 이처럼 높은 취하율에도 불구하고 피해구제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취하된 사건 중심리전 기사를 수정·삭제하거나 피해구제보도가 이뤄진 경우 피해구제된 것으로 산정하기 때문인데, 피해구제된 것으로 보는 취하 사건에 있어서 질적인 내용면에서나 피해회복 만족도 면에서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의 예로 보면, 피신청인이 약자의 위치에 있는 신청인을 협박, 회유, 또는 만족할 수 없는 최소한의 해명보도를 게재하고 취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런 경우 피해가 구제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의 문입니다.

## “정정보도 등 피해구제보도문, 2면과 같은 고정적인 지면 게재가 효율성 높아”

**김상우:** 언론사는 피해구제문의 크기나 위치 등 구체적인 이행 방법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거나 중재부에서 결정하면 이를 충실히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구제보도문을 반드시 원 보도문이 게재된 면과 동일한 지면에 게재해야 하는지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고정적인 지면을 둔다면 독자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입니다. 대부분의 신문사는 종합 2면을 고정란으로 두고 반론보도문이나 정정보도문을 게재합니다. 다만 지방면에 게재된 기사는 일부 지방의 독자에게만 배포되기 때문에 종합면보다는 원 보도면에 피해구제문을 게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또한 형식적인 박스 기사 형태보다 피해구제보도문이 두드러지게 보이게 편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피해구제문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독자의 주목도를 높일 필요가 있고, 신문이나 포털에서도 시각적으로 우수한 편집은 독자나 이용자에게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에 기사의 분량이나 위치에 대한 고려와 함께 디자인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검토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예전에 피해구제문 게재시 위원회 로고를 넣자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로고가 디자인적 측면에서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기에 피해구제문에 로고를 넣는다면 독자들의 주목도를 높여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고, 언론사 입장에서도 자체 디자인 측면에서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한동원:** 위원회 설립 초기에는 정정기사 문안 말미에 ‘이상은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정정보도입니다’라고 기재한 일이 있었고, 언론사에서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해설 기사도 함께 보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문안 내용은 수개월이 지나자 언론사에서 거부하기 시작했고, 해설 기사도 얼마가지 못하고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초기에는 언론사에서 위원회와 제도를 잘 몰라서 그렇게 해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혜승:** 박스 기사 형태나 별도 아이콘 표시를 통해 정정보도 등을 두드러지게 표시하는 것처럼, 그 이행 방법에 있어서 포털은 별로 부담이 없습니다. 언론사가 이행하면 그대로 따르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음(daum)의 경우 정정보도 등에 대해 이용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뉴스메인 페이지에 별도로 ‘바로잡습니다’ 코너를 운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덕남:** 제 경험상 90년대 말까진 언론에서 정정이나 반론보도를 하는 것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인

적권등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낮아 언론보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던 영향도 있겠지만, 언론사가 그만큼 정정이나 반론보도문의 주목도를 낮게 게재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선 당시에 비해 정정이나 반론보도문을 자주 접하게 되는 만큼 주목도 부분에서 상당히 발전했다고 생각되며, 향후에도 더욱 개선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실한 피해구제가 이뤄진다는 신뢰를 가질 만큼 언론사에서 피해구제문의 분량이나 배치를 완벽히 해주길 기대합니다.

### “일본, 원 지면과 동일한 지면에 정정보도 게재 주목성을 높이기 위해 특징적인 아이콘 표시”

**오사와분고:** 일본에서의 피해구제문 게재방법은 한국과 거의 유사하나 원칙적으로 정정이나 사과문을 원 보도면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있습니다. 만약 1면에 보도되었다면 정정보도문도 1면에 게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정보도나 사과보도를 할 경우, 박스 기사와 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정정보도’와 같은 고정적인 제목과 특징적인 아이콘 표시를 해 독자가 기사내용을 보지 않고도 제목과 아이콘을 보면 정정기사인지 사과문인지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사가 정말 큰 잘못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구제문의 크기나 분량이 원 보도문과 유사하게 이뤄지긴 무척 어렵습니다.

**사회자:** 언론중재위원회의 작년 이용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정·중재제도에 대한 종합만족도는 신청인 80.8점, 피신청인은 75.4점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소송에 비해 조정·중재제도가 ADR로서 갖는 장점으로 인해 만족도가 높을 수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위원회에 대한 만족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쟁의 당사자에게 위원회가 불편부당함이 없이 얼마나 공정하고 신중한 자세로 합의를 유도하였는가에 따라 당사자의 만족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 일본에서는 언론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고 있고, 법원에서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배상 수억 원까지 배상 판결한 바 있음



오사와 분고(大澤文翁)

· 조정·중재제도와 같은 피해구제제도 없어 언론사 자체적으로 기자 교육 등을 통해 분쟁의 예방을 위해 노력

· 언론보도와 포털은 국경을 넘어선 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있어 언론분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일 상호 교류 필요

위원회와 조정·중재제도가 지향하는 바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랬다면 피신청인의 불만이 많았을 것입니다. 위원회는 언론의 자유란 측면에서 언론사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으며, 조정·중재제도는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언론사에 더 큰 부담이 되기 전 분쟁을 해결하지는 취지이므로 언론자유를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사 입장에서도 조정·중재제도를 잘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제도가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부담을 주는 것이라 간주하여 피신청인 입장에서 방어만 하기보다 분쟁이 소송으로 비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조정 단계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조정을 진행하다 보면 정정보도할 것인지 반론보도를 게재할 것인지, 주된 맥락에서는 합의가 되었는데, 분량이나 게재위치로 다투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 경우 물론 중재부에서 적정 수준을 제시하지만 자칫 당사자 간 자존심 싸움으로 악화되어 조정이 결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해구제문의

분량이나 위치에 관한 것은 신청인의 피해구제 실효성 차원뿐 아니라 언론의 자유 보호란 측면에서도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 “위원회 분쟁해결 기능의 사회적 확대를 위해 홍보 강화”

**사회자:** 언론중재위원회는 2011년 중점추진과제의 하나로 언론중재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선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 방향, 법안 개정시 고려 사항 등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제도개선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좌담회를 마치기 앞서, 이와 관련해 아직 말씀을 못하신 의견이 있다면 부탁을 드립니다.

**황덕남:** 위원회는 매체 변화와 같은 사회 변화에 법적, 제도적으로 적극적이고 신속히 대응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뉴스서비스, IPTV 등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매체에 대해 2009년 법 개정을 통해 조정, 중재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새로운 매체로 인한 분쟁의 해결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다른 일반 민사사건 해결을 위한 제도에 비해 정말 신속한 대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이러한 적극적인 자세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였고, 스스로 위상을 높여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인격권은 균형을 잡기 어려운 문제인데 위원회가 운영을 잘 해왔다고 봅니다. 향후에도 위원회는 사회적으로 예방적·자율적 분쟁 해결을 촉진하는 기관으로 자리 잡아야 하며, 이를 위해 홍보를 좀 더 강화하면 좋겠다고 희망합니다.

### “시정권고의 효력 강화, 동일한 심의기준 반복 위반 시 공개경고문 게재조치 등”

**한동원:** 언론조정·중재제도의 경우 조정이 성립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실효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시정권고는 언론사가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고 있어도 제재할 방법이 없어 문자 그대로 실효성이 없는 권고에 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사의 자율규제기구인 신문윤리위원회의 경우, 같은 규정 위반으로 1년 동안 3회 이상 경고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게 했으며, 공개경고의 경우에는 한국신문협회 소속 전 회원사의 지면에 보도하게 한다는 제재규정이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도 이러한 제재규정을 도입하여 시정권고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중재부, 피해구제문 이행 방법 명확히 지정하고, 포털이 자체 생산하는 보도의 해결책 마련”

**김상우:** 피해구제율에 치중하기보다 내실을 강화해야 합니다. 2010년 언론중재위원회 이용만족도 조사결과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당사자가 합의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재부에서는 합의문의 내용, 이행방법 등을 당사자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합의를 유도해야 합니다.

인터넷 매체의 사건에서 중재부는 피해구제문의 게재 위치, 게재 시간 등을 문안에 명시하지 않고 합의를 유도하거나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재부는 또 다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포털이 자체 생산하는 기사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합니다. 2009년 서울조정413사건의 경우, 변희재씨가 자신을 비방하는 진중권씨의 인터뷰를 방송해 피해를 당했다며 야후(yahoo)를 상대로 조정신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재부에서는 해당 동영상은 포털이 자체 생산한 것이므로 조정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유사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 “찾은 신청인 명단 공개 등 조정·중재제도 남용 방지책 마련”

**정혜승:** 신청인이 언론조정·중재제도를 남용하여 언론사나 포털을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나치게 자주 신청을 하거나 당하는 기관, 단체, 언론사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포털의 특성상 뉴스서비스뿐만 아니라 게시판 서비스와 같이 미디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포털의 뉴스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언론중재법에 포함되었으니 일부 해결되었으나, 게시판 서비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정부나 국회 등 각계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성공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조정·중재제도를 모범사례로 보고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언론중재위원회는 안정적인 제도 운용을 하고 있으므로 유사조정 기관의 리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언론보도와 포털, 국경을 넘어 분쟁 가능 개선책 마련을 위해 한·일 교류 강화”

**오사와 분고:** 이번 좌담회를 통해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 해결과 피해구제 방법에 대해 논의가 깊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일본에는 언론중재위원회와 같이 언론분쟁을 처리하는 기관이 별도로 없고 대개 소송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제도에 대해 조금 부러운 감이 있습니다.

언론보도나 포털의 경우 국경을 넘어선 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언론분쟁의 해결이나 피해구제를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양 국가가 상호 교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언론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언론이 자체적으로 신속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고, 세계 고유한 소송 전 중간단계인 조정·중재제

도 역시 분쟁해결에 있어서 굉장한 장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분쟁이든 처음에는 작은 형태로 발생되었다가 시간이 갈수록 점차 커지는 것 같습니다. 조정·중재제도의 취지가 작은 불만이 큰 분쟁으로 악화되기 전에 해결하지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건강한 사회가 구현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좌담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위원회와 언론조정·중재제도가 향후 10년을 위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